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17. 5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적 운영, 추진계획의 수립,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개인정보 유출 시 소송 및 분쟁 조정, 기타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
4. 개인정보 유출 통제 및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
5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6. 개인정보보호 규정 이행 상태 및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13인 이내,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이 당연직으로 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에 의해 소집되며,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②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의사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 처리를 요할 때에는 서면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5조(보고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,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